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74
----------	------

발의연월일 : 2020. 9. 9.

발 의 자 : 태영호 · 송언석 · 이명수
정희용 · 홍준표 · 김정재
박성중 · 한기호 · 이주환
김석기 · 지성호 · 김용판
조정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자 등의 권리 침해와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록 하며,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32조의2제1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표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8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권 등의 침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p><u>제21조제1항제1호에</u>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p> <p>2. (생략)</p> <p>② ~ ⑥ (생략)</p>	<p><u>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8호</u>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